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심의 검토보고

[2024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2024. 11. 2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상규

1. 연구단체 운영 현황

연구단체명	구성인원	대표의원
2024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6명	김경이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심의.

3. 심의 대상 연구단체

-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소요예산 : 5,0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91,051천원의 10%이내 : 19,000천원)

5. 검토보고

- 연구활동 결과보고

연구단체명		2024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 내용	연구주제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성북구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에 맞추어 체육활동 기반 구축을 통해 스포츠 친화도시 수립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마련
	연구결과	(별 첨)

연구 활동비	수령액	금오백만원(W5,000,000)	
	집행액	금이백삼십사만삼천오십원(W2,343,050)	
	잔액	금이백육십오만육천구백오십원(W2,656,950)	
	집행내역	강사비	금이십사만원(W240,000)
		인쇄비	금일백오십만원(W1,500,000)
		홍보비	금팔만팔천원(W88,000)
		회의비	금오십일만오천오십원 (W515,050)
연구 용역비	수령액 / 집행액	금일천구백구십만원(W19,900,000)	

■ 검토의견

- 2023년 11월 ‘2024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이하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심의내용은 연구 활동비 책정과 배분,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191,051천원)의 10%이내 에서 지원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지문경비, 세미나 공청회·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어, 검토결과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의원님들의 생활체육 연구에서 성북구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에 맞추어 체육활동 기반 구축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스포츠 친화도시 만들기 연구를 하였는데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 연구를 하고자 연구용역(지방자치발전소)을 의뢰하고, 집행부 및 관련 생활체육 관련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생활체육 현장방문 (서경대학교, 도봉구, 마포구체육회), 정기적인 회의 및 토론회, 생활체육 정책 분석과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지문 의견을 통하여 성북구 특성에 맞게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구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증대에 맞추어 생활체육활동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한 연구모임 활동은 적절하다고 검토됨.

※ 관계법령

- 1) 제9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7.)
②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3.7.)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9.3.7.)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2)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